【 비과세종합저축 특별약관 】

제1조(특별약관의 가입)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가 보험계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② 계약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65세 이상인 거주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③ 제2항 제1호의 "65세"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가입시점에 따라 "65세"를 아래의 적용나이로 봅니다.

가입시점	적용나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61세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62세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63세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64세
2019년 1월 1일부터 가입하는 경우	65세

제3조(가입한도)

① 계약자 1명당 보험기간 동안 납입하는 보험료의 한도액은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액을 더하여 5천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의 「모든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공제회를 포함합니다.

제4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비과세 적용)

①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하여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

당소득(유배당 상품에 한합니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8조의2(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에 따라 생계형저축에 가입한 계약자는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중복가입자에 대한 처리)

계약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비과세종합저축」을 중복가입한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의 「비과세종합저축」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만 제4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비과세 적용)을 적용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 조세특례제한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